

# 서 면 답 변 서

질의위원	이 수 현 위원	소 속	평 창 군 의 회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자치행정과장)	일 자	질의 : 2002년12월12일 답변 : 2002년12월12일
회 의	제100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3차 예결특위		

**【질문요지】**

-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원 현황 및 지원 규정 제출

**【답변요지】**

- 2002년도 교육기관 보조 지원 결정 사업은 6개 학교 총사업비 720백만원 중 완료 사업 4건, 340백만원과 진행중에 있는 사업 2건, 380백만원이 있으며 진행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이월 조치하여 사업 완료후 보조금 집행 예정임.  
(첨부 - 사업별 지원 현황)
-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형평성 유지와 열악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건전 지방재정 육성을 위하여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와 보조 비율을 자체 내부 규정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.  
(첨부 -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내부규정)

# 교육기관 예산지원 현황

학교명	사업명	사업비(백만원)				비고
		총액	교육 재원	군비 보조	비율 (%)	
합 계		2,703	1,983	720		
진부고등학교	다목적실 신축공사	1,200	950	250	20.8	완료
대화고등학교	학교 실습실 보수공사	50	-	50	100	"
봉평고등학교	체육관 시설 보강공사	10	-	10	100	"
속사초등학교	급식소 증축공사	40	10	30	75	"
평창중학교	다목적실 신축공사	1,171	921	250	21.3	진행 (명시이월)
도암중학교	선수 합숙소 개축공사	232	102	130	56	"

#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내부규정

평 창 군

#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내부규정

- 지방자치의 출범이후 교육청을 비롯한 각급 학교에서 무분별한 재정지원요구증대
-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이를 전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초래
- 지원규정을 제정하여 엄선 지원함으로써 거액 지방재정육성

## 1. 지원근거

- 지방재정법(법률제6113) : 제14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
-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(법률제6213호) : 제11조(지방자치단체의 부담)
- 국민체육진흥법(법률제6131) : 제3조(체육진흥시책 및 권장)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(법률제5942호) :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
- 시·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(대통령훈령제14981호)

## 2. 보조사업의 범위(법적)

-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급식시설·설비사업
-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
-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
-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·문화공간 설치사업
-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 등 여건개선사업
-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# 3. 보조사업의 지원 제한

- 지방비(지방세 + 세외수입)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 한때에는 지원불가
- 국고보조금을 군비로 충당하지 못 한때에는 지원불가
-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
- 보조사업을 목적외 사용하였거나 성실히 시행하지 않은 경우

### 4. 보조금의 사용 및 검사

- 교부한 보조금은 목적외 사용금지
- 보조금의 전부 및 일부반환
  - 보조금교부 목적외 사용한 때
  -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한 때
  -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
  -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
- 보조금을 받은 학교 및 교육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지출하여야 한다.
- 보조금의 사용보고
  -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
  -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 경리보고서
  -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완료 및 정산보고
-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군에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.
- 보조사업의 검사결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추후 어떠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

## 5. 보조금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

구분	사업명	세부사업명	기준보조율	보조방법	비고
문화·체육 시설	다목적실	다목적실 신축	사업비의 30%범위내	교부신청	지역주민과 공동활용
		지역주민이 다수 활용하는 시설	사업비의 30%범위내	“	“
	운동장	공설운동장역할	사업비의 50%범위내	“	“
		“ 대규모시설일 경우 (1억원 이상)	사업비의 30%범위내	“	“
		보조경기장역할	사업비의 30%범위내	“	“
초·중 학교	급식시설	급식시설 신축 (학교직영시설)	사업비의 30%범위내	“	“
		급식시설 보수 (학교직영시설)	사업비의 30%범위내	“	“
기타	기타시설	지역주민관련시설	사업비의 30%범위내	“	“
		학교자체시설	0	“	자체

## 6. 제외대상

- 학교자체시설보강 및 교육용 기자재구입
- 급식시설의 위탁운영시
- 소모성경비 지원

## 7. 적용

- 본 규정의 적용은 2003. 1. 1이부터 규정 개정시까지 적용한다.